#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

2017. 03. 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

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7. 3. . 행정·재무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3월 3일 / 강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7. 3. 20.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금석 행정지원과장)

#### □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 「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증원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.

#### □ 주요내용

가.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
O 정워의 총수 증워: 13명

구 분	정원의 총수	집행기관 정원	구의회 사무국 정원		
현 행	1,523	1,495	28		
변경 후	<u>1,536</u>	1,508	28		
증 감	+13	+13	-		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제3조 관련 【별표3】)

○ 정원 총계 : 1,523명 ⇨ 1,536명 (+13명)

○ 일반직 계 : 1,518명 ⇨ 1,531명 (+13명)

- 6급 이하 : 1,445명 ⇨ 1,458명 (+13명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7. 2. 15. ~ 2017. 3. 7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제외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강희순)

-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,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충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 복지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임
-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  - 가. 증원 인원은 13명으로 행정자치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10명(복지직 8명, 복지담당 행정직 2명)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시행에 따른 3명(복지직)임
  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제1항에서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개정 조례안의 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은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

#### **※ 기준액 대비 예산편성 현황**(기준일: 2016. 11. 18.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기 준 액	기준인건비 예산편성 현황			기준액	비
		(행정자치부)	총 예산액	일반회계	특별회계	대비 %	고
2017	7년	126,686,663	124,767,424	122,069,069	2,698,355	98.4%	
2016년	당초	123,207,091	111,174,546	108,431,012	2,743,534	90.2%	
	최종		113,367,282	110,623,378	2,743,904	92.0%	

○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

사회복지 인력의 증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전환, 주민 복지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,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붙임: 관련 법령 1부.

#### 〈붙임〉 관련 법령

##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<u>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</u>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5.>
-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,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(이하 "자율범위"라 한다)를 함께 통보할수 있다. 〈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3.5., 2014.11.19.〉
- **제3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 - 2. 본청·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 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  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  - 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  -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7.3., 2013.12.4.>

-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12.4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